



제14장 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세

가. 개념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상속은 불로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보다는 부모 등의 사망이라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재산이 세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층간 소득불균형과 생산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특정인에 대한 부의 집중을 막고, 소득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 납세의무자

● 상속세의 부과대상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법에 의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서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둘 때에는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가 부과되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지분 및 포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지분은 균등한 것이 원칙이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보다 50% 더 많습니다.

상속인이 자기 몫의 상속분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면 되며, 이와 같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신고와 납부

● 신 고

피상속인 즉 사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데, 국내의 상속재산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개의 상속재산 중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한 날)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위 기간 내에 제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상속세액 공제혜택을 받으나,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 부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3년(다만 가업상속재산의 경우는 5년,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7년)의 기간 내에서 연부연납(분할납부)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상속세액

● 기본원칙

상속세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하여 상속과제표준을 산출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상속세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후,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 등을 공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에 기산되는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 경우에는 국내·외 재산을 불문하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재산에 한정됩니다.

● 공제

이러한 상속세과세과액에서 다시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공제 또는 법정지분내 실제 상속가액중 30억원 한도), 자녀공제(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500만원 × 20세까지의 잔여년수), 60세 이상 연로자공제(1인당 3천만원), 장애자공제(500만원 × 75세까지의 잔여년수) 등 각종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상과 같은 각종 공제(배우자공제 제외)를 적용하는 대신 5억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최소공제 5억원, 일괄공제를 선택한 경우 5억원 합계 10억원이 공제되므로 10억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 세액산출

이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이 산출되면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액이 산출하게 되는데, 만일 조부모가 그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속세액에서 30%가 가산되며,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나 앞에서 말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등을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0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9,0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억4,000만원 +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억4,000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증여세

가. 개념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람이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구별되나,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계층간의 소득불균형과 특정계층이나 특정인에 대한 부의 집중을 완화시키는 가능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납세의무자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워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지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도 증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신고와 납부

● 신 고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또는 납부하는 것이 워칙입니다. 그러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가 되며, 증여자와 증여를 받은 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된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가 됩니다.

● 납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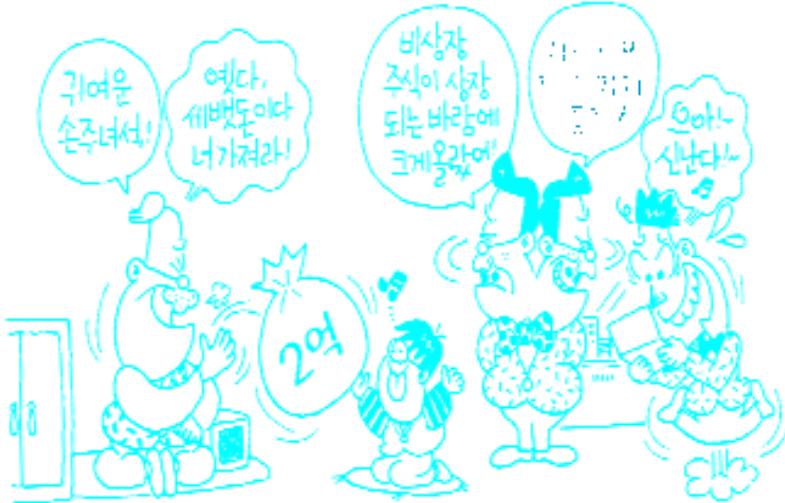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제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증여세액 공제혜택을 받으나,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라. 증여세액

● 증여세액

증여세액은 증여재산에 증여의제재산을 합산하고 여기서 배우자공제(10년간 5억원) 및 자녀공제(10년간 3,000만원,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증여의제재산



증여의제재산이란 실제로 증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상 증여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 여기에는 신탁으로 위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권리를 줄 경우,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있어 보험금수취인과 보험금불입자가 다른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저가나 고가로 양도 또는 양수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상장등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증여로 의제까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세액산출

이상과 같은 증여재산과 증여의제재산에서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를 통해 증여세과 세표준이 산출되면 10~50%의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액이 산출되게 되는데(증여재산에 따른 세율은 상속세의 경우와 동일), 만일 조부모가 그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이 30%가 가산되고,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상속세의 경우와 같습니다.



제15장 어음·수표제도

1. 어음·수표의 기능

● 개념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면서 많은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말하고,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한다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 어음과 수표의 차이

수표의 지급일은 은행이기 때문에 발행하기 전에 은행에다 자금을 맡겨 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을 하여야 하나, 어음은 반드시 당좌예금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은행도(銀行渡)어음은 지급장소가 은행이므로 할인 등 유통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은 있으나 채무불이행사태가 발생하면 차용증서나 협관보관증과 하등 다른 바 없으므로 은행도어음을 받을 때에도 개인어음을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의 자력을 미리 알아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어음 사용단은 개인어음이 아니라 은행도어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어음·수표 발행시 유의사항

어음·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음·수표를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권·채무관계가 생기며, 또한 발행

된 어음·수표는 계속 유통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어음·수표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발행인이 생각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수도 있습니다.

3. 어음·수표 취득시 유의사항

● 요건확인

먼저 필요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배서란의 배서가 연속(수취인이 제1배서인이 되고, 수취인이 지정한 피배서인이 제2배서인이 되는 식으로 계속되는 것)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며, 나아가 해당은행에 어음·수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배서가 연속되어 있다고 하여도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믿을 수 없다면 취득하지 말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의 배서를 받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위조·변조여부 확인

이미 기재한 사항이 정정된 경우 위조·변조가 되어 예상되지 못한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정·말소가 정당한 권리이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어음공증

참고로 어음에 대하여 공증인이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과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미리 공증을 받아두면, 굳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공증인이나 공증인과 합동법률사무소 등으로부터 공증한 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 기 타

수표가 부도나는 경우에는 수표의 발행인은 어음의 경우와는 달리 민사책임 외에 은행의 거래정지처분과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되므로 어음보다는 수표를 취득하는 것이 그 대금지급을 보다 확실히 보장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어음·수표 양도시 유의사항

● 어음배서의 개념

어음을 양도할 때는 배서에 의하게 됩니다. 배서란 어음의 유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고 있는 간편한 양도방법을 말합니다.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어음의 뒷면에 어음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를 쓰고, 자기이름과 도장을 찍어 그 특정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 어음배서의 방법

어음을 받을 자(피배서인)는 배서인에 의해 지정될 수도 있고, 지정되지 않고 백지인

상태로 그냥 양도(백지식 배서)될 수도 있습니다.

어음에 배서한다는 것은 마치 어음발행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비록 발행인에게 신용이 없거나 돈이 없다고 하여도 유력자가 배서하면 그 어음의 신용을 높아지는 것입니다.

● 수표의 배서

수표도 어음에서와 같은 배서가 인정되고 있으나 수표는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어음의 배서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즉, 수표배서인은 지급담보책임만을 부담하므로 지급인(보통 은행)은 배서할 수 없고,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습니다.

5. 어음·수표 사고시의 조치

● 위 조

어음 또는 수표의 위조란 권한이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과 도장을 위조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청구해 오든지 어음 또는 수표가 위조되었음을 내세워 이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변 조

어음 또는 수표의 변조란 권한이 없는 자가 기명 날인 이외의 어음 또는 수표의 기재 사항을 변경·삭제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되기 전에 기명

날인한 사람은 원래의 내용대로 책임을 지고, 변조된 후에 배서한 사람은 변조후의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 분실, 도난시의 조치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하여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아야 합니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의 행사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가 훼손되거나 불에 타버려 형태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권판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부 도

어음·수표의 부도란 어음·수표의 지급기일에 어음·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도사유로는 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인감누락, 서명·기명누락, 인감불분명, 정정인 누락·상이, 지시금지·횡선조건 위배, 금액·발행일자 오기, 배서 위배), 사고신고접수(분실·도난, 속아서 발행 또는 교부), 위조·변조, 제시기일 경과 또는 미도래(제시기일 미도래는 수표의 경우는 제외), 인감·서명 상이, 지급지 상이, 법에 의한 지급제한 등이 있습니다.

● 부도어음·수표 소지인의 조치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액면금액을 회수하려면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 부도어음·수표의 체무자와 그 지급을 교섭하고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라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발행인이 금융기관에 예탁한 별단예금에 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동시에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음·수표의 소지인은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인수인은 물론 배서인이나 보증인을 상대로 순서에 관계없이 그 중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또 모두에 대하여 동시에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음·수표에 관한 청구는 일반

채권에 비하여 시효기간이 짧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배서인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어음채권을 상실합니다. 수표의 경우 소지인이 6개월 이내에 발행인, 배서인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6. 형사책임

어음은 부도가 나더라도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발행인 등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나, 수표는 부도가 나면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지인이 법에 정한 10일 이내에 수표를 유행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도가 있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행인은 예컨대 1997년 10월 1일임에도 수표상에는 1998년 2월 1일이라고 기재하는 선일자(先日字)수표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수표상의 발행일자보다 일찍 제시되는 것은 무방하며,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은 수표의 경우에는 발행일을 기재하고 그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1993년 12월 10일 부정수표단속법의 개정으로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부도가 난 경우에는 그 수표가 회수되거나, 회수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표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발행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16장 주요상담사례

1. 미성년자인 자녀의 국적회복 신청

▣ 저는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회복 신청을 하려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도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미국법에 의하면 18세 전에는 미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우리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외국의 법령상 우리국적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을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병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워국적 포기가 어려운 미성년자 등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워국적 포기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규정에 따라 이중 국적 상태가 된 사람은 18세가 된 이후 국적선택제도에 따라 한국국적을 선택하면 됩니다.

2. 이혼과 국적변동

▣ 저는 원래 일본인 여자이나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으며 일본 국적은 상실하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면 저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후회**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이후 하더라도 국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국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3.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국적취득

문 저는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한국인으로 여기서 만난 멕시코 국적의 여성과 결혼을 하자 합니다. 멕시코 여성과 함께 한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특별한 비자와 절차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혼인신고로 바로 우리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한국과 멕시코는 1979년 4월부터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멕시코인은 3개 월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의 **후회**신고는 **후회**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 결혼예정자의 경우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며 체류가능 기간동안 위와같이 **후회**신고를 마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체류자격을 거주(F-2)자격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한편 위와같이 **후회**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법무부 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한국국적을 취득합니다. 한국 사람의 배우자가 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기 위하여는 **후회**을 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만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외국인이 한국사람과 결혼하지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후회**한 상태로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에게 귀화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에 의한 귀화적격심사를 받아서 국어능력이나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 판정된 때에 비로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불법체류자의 한국인과의 동거에 의한 국적 취득 여부

문 저는 대한민국에 3년째 불법체류중인 중국교포 근로자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고 1999년 9월에는 이들도 출산하였습니다. 저의 아들은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저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국적법이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태어난 자녀의 국적 취득에 관한 문제이고, 그 자녀의 아버지인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한국인 여성과 동거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국내에 적법하게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경우, 불법체류기간은 귀화에 필요한 국내체류기간으로 산입하기 어렵고 아울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만큼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요건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불법체류사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화허가를 받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출국하여 불법체류상태를 해소한 후 적법한 절차로 재입국한 상태에서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어야만 귀화허가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 호적에 남아있는 미국시민권자의 이중국적 여부

문 저는 미국으로 이민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호적에는 제가 제적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답 우리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날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

실하게 됩니다. 또한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호적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 됨과 동시에 제적됩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6. 아버지가 외국인인 자녀의 성과 본

▣ 저는 미국인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채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녀의 경우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성과 본은 어떻게 정하게 되는가요.

답) 후외중 출생자의 경우 우리민법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성을 한국식으로 지어야 한다거나 글자 수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함에 따라서 아버지가 외국인인 자녀도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자녀의 성과 이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의 규정대로라면 그 자녀의 성명을 외국인 아버지를 따라 외국식으로 지을 수 있으므로 마이클 잭슨이나 존 텐버러는 식으로 성명을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은 새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자녀가 한국국적을 선택하여 한국사람으로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외국식 성명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즉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7. 이중국적자의 국내체류시 처우

▣ 저는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나 아버지가 한국국적자이므로 한국과 미국 양쪽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15세의 이중국적자입니다. 현재 부모와 함께 입국하였는데 국내체류시에는 어느 나라의 국민을 처우받는지요.

답 이중국적자는 양국의 국적이 모두 유효하므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우리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처우를 받게 됩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이중국적자는 친권자의 의사에 따라 우리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처우됩니다. 그러나 18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국인으로서의 처우를 받으려면 외국여권으로 입국하여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체류하여야 합니다. 국민으로 처우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동안 외국인등록, 체류, 기간연장허가 등 외국인으로서의 모든 의무가 면제되며, 출입국시에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8. 영주권자의 국내체류기간

문 저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자의 국내 체류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요.

답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2년이상 체재하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국내체재기간이 2년이 되는 날 여권이 무효로 됩니다. 특히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자로서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동법에 의한 병역면제처분 또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자의 거주목적의 여권은 국내체재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경우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자 등 여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2년 이상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 1년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미국 이민국적법에 의해 영주권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그 기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9. 국적상실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문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국적을 상

실한 날로부터 3년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답) 현행 「외국인토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즉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하여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신고를 계율리하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으나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10. 외국인의 국내재산 취득

문) 저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영어교사를 하는 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캐나다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므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건물에 대하여는 따로이 정해진 법률이 없으며, 토지에 대하여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신고를 한 때에 한하여 토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외동포법의 시행으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국방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제한한 필요가 있는 구역을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토지취득이 가능합니다.

11. 미국 영주권 소지자의 주민등록증 취득

문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주민등록증을 얻을 수 있는지요.

답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자도 국적은 그대로이나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을 하려고 하면 영주권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법은 국내거소신고제도를 두어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거소를 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여 주는 바, 이는 제반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영주권자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문 저는 미국영주권자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취득할 수 있다면 취득 및 처분 절차는 어떠한지요.

답 영주권자는 우리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또한 주소지증명서류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 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도시에는 인감증명이 필요 한 바, 재외 국민의 경우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에 인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신청을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등의 또는 위임 사실에 관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주소지 증명서류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인감 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외국인의 상속

▣ 저는 미국에 이민 온 재미동포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유언없이 돌아가셨고 생전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저의 동생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는 상속권한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위 상가의 소유권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상속을 받는다면 어느 한도에서 상속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재산상속은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아니하므로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당연히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그 상속분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바, 부의 사망과 동시에 부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모 및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상속분은 유언이 없는 경우 형제들간에는 균등하며(장남, 차남 또는 결혼한 딸이나 미혼인 딸 모두 같음), 모든 자녀들 상속분의 1.5배입니다. 다만, 상속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4. 외국인의 부동산 처분

▣ 저는 이민을 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인감증명을 받지 않고 한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요.

답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입국하지 않고 외국에서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 첨부서류로는 처분대상 부동산, 수임인 및 위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명시된 처분위임장, 인감증명 또는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위임장의 서명을 본인이 직접하였다는 취지의 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 내지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위임장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는 번역문 등을 제출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을 받지 않고 한국내 부동산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한편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내국인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으나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 대신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법의 대상인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주소증명을 대신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5. 외국인의 상속재산 반출

문 저는 캐나다에 이민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국적은 상실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그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상속받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면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상속을 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되나 소유권을 잃게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간에 공유가 되고, 부동산 상속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상속인들

의 공동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쳐야 하며, 그 후에는 각자 지분별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본인과 같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박출할 수 있습니다. 박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유통에 재외동포재산박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6. 재외국민의 외화반출

문 저는 미국의 영주권자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제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휴대하여 들어오거나 국내에 송금한 지급수단을 해외로 반출하는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요.

답 종전에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은 3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어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지급수단의 박출에 대하여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3개월 초과 체재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가 필요하나 허가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음). 한편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재외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위와 같은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재외국민도 외국인과 동등한 조건하에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지급수단을 박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17. 재외동포법과 의료보험 혜택

문 저는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일교포입니다. 국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야 하는지요.

답 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재외동포에게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일시적인 치료만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유학생이나 국내취업자 등 관련 서류에 의해 국내에 체류할 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일시 출국하는 등의 자유로 인해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는 않았더라도 전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18. 이중국적자의 병역 의무

■ 미국 출생인 이중국적자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수 없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고 유학을 위해 미국여권으로 출국한 사람입니다. 만약 27세까지 귀국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 이중국적자로 ①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시민권자 ② 부모와 같이 17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 ③ 국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단독 취업 또는 재학하고 있는 시민권자는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해당되어 병역 의무자 본인이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중국적자로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국외여행허가기간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는 미귀국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국자의 부모 등 귀국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9. 이중국적자의 국외여행허가

■ 이중국적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여권으로 출·입국시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요.

■ 우리나라 국민을 부 또는 모로 하여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은 출생과 동

시에 2개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되며, 만 18세 1월 1일 이전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으면 국적을 포기 할 수 없고 국외여행시에는 병역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정부가 발행한 여권으로 출·귀국시에는 병역법에서 정한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며, 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허가의무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출입국을 위해서는 관할 재외공관에 시민권 등 국외체류증명서를 제출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아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20. 이중국적자의 병역 문제 및 대한민국 국적 이탈

-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대한민국 국적자이신 이중국적의 남자로서 현재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저는 현재 만 20세이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싶은데 남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지 않으면 포기가 안된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지요.
- 출생 기타 국적법의 규정에 의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선택 기간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적법시행령에 규정된 사람(병역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즉 만18세가 되는 해 1월1일 이후에 해당되는 사람)은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제2국민역에 편입된)때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국적자인 남자의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연령(만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전에는 병역에 관계없이 한국국적 포기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병역문제를 해결한 후 2년 내에 국적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즉,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위 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이중국적자로 남게 됩니다.

국적선택신고는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 또는 재외공관에 ① 호적등본 ②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적선택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21. 국적상실 후의 조치

문 저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캐나다 국적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던 여자로서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국적 상실 신고등 국적 상실 후에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상실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호적법상 국적상실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자면, 국적상실의 신고는 호주·호주승계인·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알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하며(호적법에서는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적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의해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법한 체류자격(비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단기(90일 이내)의 경우에는 단기종합(C-3)비자를 많이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에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2. 외국인을 초청한 사람의 책임

문 저는 사업상 필요에 의해 외국인들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피초청자들이 체류허가기간 내에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 초청자의 책임이 무엇인가요

답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보호 또는 출입국사법의 신병인도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자 기타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을 한 자(이하 "신원보증인"이라 한다)에게 피보증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초청자의 혀위초청 행위 등에 관하여 제7조의 2에서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혀위 사실의 기재 또는 혀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혀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23. 근무처 변경 허가

문 저는 회화지도(E-2)자격 비자를 소지하고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인데 초청기관인 학원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강의가 가능한지요

답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한다", 동조 제2항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 외에

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없이는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회화강의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귀하를 초청한 원근무처에서의 이적동의서가 필수서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재외공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부 록〉

재외동포 법률상담 안내

법무부 국제법무과 재외동포 법률상담전용 팩스를 설치하고 「재외동포 FAX 법률상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5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www.moj.go.kr). 이는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지역이나 시차에 관계없이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제법무과 검사들 및 법무관이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기대합니다.

- **재외동포 법률상담 전용 Fax**

(국제전화코드) -82-2-503-0488

- **인터넷 도메인 : www.moj.go.kr**

※ 유의사항

- FAX 상담의 경우 상담자의 성명, 수신할 Fax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인터넷 상담시 화면에 나타난 필요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아니며 소송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사항, 진행중인 소송관련 사항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제도 문의처

업무	관련 기관 및 부서	Homepage	전화
국적	법무부 법무과	http://www.moj.go.kr	82-2-503-7031~2
체류(거소 신고,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재입국, 불법체류)	법무부 체류심사과	http://www.moj.go.kr/immi	82-2-503-7101~2
비자발급	법무부 입국심사과	http://www.moj.go.kr/immi	82-2-503-7097
병무	병무청 병무민원 상담소	http://www.mma.go.kr	82-2-1588-9090
부동산 등기	법원행정처 등기과	http://www.scourt.go.kr	82-2-3480-1394
호적	법원행정처 호적과	http://www.scourt.go.kr	82-2-3480-1389
세금	국세청 민원실	http://www.nts.go.kr	82-2-1588-0060
학교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http://www.moe.go.kr	82-2-720-3046
주민등록 및 인감	행정자치부 주민과	http://www.mogaha.go.kr	82-2-3703-4860
의료보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http://www.mohw.go.kr	82-2-503-7570
여권	외교통상부 여권과	http://www.mofat.go.kr	82-2-720-2736
부동산 취득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http://www.moct.go.kr	82-2-504-9123
보상금	국가보훈처 보상급여과	http://www.pvaa.go.kr	82-2-780-9490
외국인 투자, 국내 재산 반출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http://www.mocie.go.kr	82-2-2110-5351
외국환거래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http://www.mofe.go.kr	82-2-503-9276~7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노동부 임금정책과	http://www.molab.go.kr	82-2-503-9732
해외 이주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	http://www.mofat.go.kr	82-2-2100-7570
국가소송	법무부 송무과	http://www.moj.go.kr	82-2-503-7040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82-2-1355
공무원 연금	행정자치부 복지과	http://www.gepco.or.kr	82-2-3703-4560
군인연금	국방부 연금과	http://www.mnd.go.kr	82-2-748-5361
사립학교 교원연금	교육인적자원부 교원복지담당관실	http://www.moe.go.kr	82-2-720-3431
일반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82-2-132

해외주재 법무협력관 안내

- 법무부는 해외동포에 대한 법적 지원 등을 위해 아래의 5개 재외공관에 법무협력관을 파견하여 두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법을 비롯하여 본 책자 관련사항은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의 법무협력관에게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협력관 연락처

공 관	전 화	F A X
주 미 대 사 관	1-202-939-6462	1-202-234-6387
주 일 대 사 관	81-3-5476-3286	81-3-5476-3298
주 중 대 사 관	86-10-6532-0290-306	86-10-6532-0145
주 유 엔대 표부	1-212-439-4062	1-212-986-1083
주제네바대표부	41-22-748-0000	41-22-748-0003

알 립

이 책자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우리나라 법률·제도 중 재외동포들과 관련이 많은 부분에 대하여 대략적인 소개를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호사나 해당 부처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이 책의 내용은 법률적 조언(Legal Advice)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대표〉

국제법무과장

황윤성

〈편집위원〉

국제법무과 검사 김형준

국제법무과 법무관 황우진

법과 생활

발행처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 소 427-720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 화 82-2-503-9505~6

팩 스 82-2-504-1378

전자우편 oila96@nuri.net

Division of International Legal Affairs

Ministry of Justice

Gwachon-si (427-720)

Republic of Korea

Tel 82-2-503-9505~6

Fax 82-2-504-1378

E-mail oila96@nuri.net

〈비매품〉

이 책자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노는 수정할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신 분은 위의 주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